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황은화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-1019

제출년월일 : 2026. 3. 11.
발 의 자 : 황은화, 박태순, 김재국 박은경, 한명훈, 송바우나, 유재수, 이지화, 설호영, 박은정, 이진분, 최찬규, 현옥순, 선현우, 한갑수, 김유숙, 최진호, 김진숙 의원 (18인)

1. 개정이유

○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공업지역 안의 임시 창고용 가설건축물을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○ 「농지법 시행규칙」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)

- 공업지역 안의 공장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부지에 설치하는 임시창고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재질을 철파이프구조로서 벽 또는 지붕이 단열재가 없는 강판까지 확대함
- 가설건축물에 농막, 농촌체류형 쉼터를 신설함

3.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 1

4. 현행조례 : 붙임 2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 3

6. 예산수반사항 : 붙임 4

○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7. 부서검토의견 : 붙임 5

【붙임 1】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

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2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공업지역 안의 공장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(다만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장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)에서 해당 부지 내 임시창고 용도로 설치하는 철파이프구조로서 벽 또는 지붕이 단열재가 없는 강판 재질의 건축물

10. 「농지법 시행규칙」 제3조의2에 따른 농막, 농촌체류형 쉼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속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	황은화 의원 대표발의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가설건축물) ① (생 략)	제20조(가설건축물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.	②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.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9. 공업지역 안의 공장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(다만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장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)에서 해당 부지 내 임시창고 용도로 설치하는 철파이프구조로서 벽 또는 지붕이 단열재가 없는 강판 재질의 건축물
<신 설>	10. 「농지법 시행규칙」 제3조의2에 따른 농막, 농촌체류형 쉼터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9-1019

제안년월일 : 2026년 3월 27일
제 안 자 : 도시환경위원장

☐ 수정이유

○ 공단지역의 가설건축물 재질 범위 확대에 앞서 공단지역 가설건축물 전반에 대한 노동자 안전 확보, 시설물 관리방안 등의 추가적인 검토 필요.

☐ 주요골자

○ 공업지역 안의 임시창고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 범위를 삭제함. (안 제20조제2항 제9호)

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0조제2항 중 제9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"제10호"를 "제9호"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□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20조(가설건축물) ① (생 략)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. 1. ~ 8. (생 략) <신 설>	제20조(가설건축물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1. ~ 8. (현행과 같음) 9. 공업지역 안의 공장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(다만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장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)에서 해당 부지 내 임시창고 용도로 설치하는 철파이프구조로서 벽 또는 지붕이 단열재가 없는 강판 재질의 건축물	제20조(가설건축물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1. ~ 8. (개정안과 같음) <삭 제>

<신 설>	10. 「농지법 시행규칙」 제3조의2에 따른 농막, 농촌체류형 쉼터	9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③ (개정안과 같음)